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(2차)

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?
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- (<u>신청기간</u>) 2024. 2. 26.(월) ~ 2025. 2. 25.(화)
- (<u>신청방법</u>) 복지로 홈페이지(<u>www.bokjiro.go.kr</u>)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 본인 방문접수

(전화안내)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: 1600-0777 / 북구청 노인장애인과: 241-7623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: 241-8321 /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: 241-8563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: 241-8363 / 강동동 행정복지센터: 241-8383 효문동 행정복지센터: 241-8422 / 송정동 행정복지센터: 241-8443 양정동 행정복지센터: 241-8458 / 염포동 행정복지센터: 241-8483

- (<u>연령요건</u>) 19세 ~ 34세 청년
- (<mark>지원조건</mark>)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가입자), 월세 거주
- (<u>소득요건</u>) 청년독립가구* 중위소득 60%이하(1인 1,337천원) 원가구** 중위소득 100%이하(4인 5,729천원)
 - * 청년독립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 - **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, 모)
- (<mark>주택기준</mark>)「주택법」에 따른 "주택*" 및 "준주택**",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,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
 - * 주 택: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
 - ** 준주택 :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 등

○ (지원제외)

- ①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②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-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④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

○ (<mark>구비서류</mark>)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

- 1. 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, 서약서
- 2. 소득·재산 신고서
- 3.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
- 4. 입금통장 사본
- 5.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)
- 6.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(종류무관,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)
- 7. 부채 증빙서류
- 8. 기타 증빙서류 등